

## 누구를 위한 보상인가

### - ‘산재 전문’ 뒤에 숨은 왜곡의 실태

유상철 회원, 노무사

#### 이쑤시개 포장하는 수습 노무사

힘겹게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6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많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적 경험을 쌓기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 수습 노무사에게는 수습 기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런데 후배 노무사가 들려준 수습 때 일상은 어쩐지 좀 안타깝다. 이쑤시개를 비닐봉지에 소분하고 사무실 명함을 끼워 홍보물을 만든다. 그리고 박카스를 들고 함바집(식당)을 찾아다니며 입구에 놓아두는 일을 반복했다.

종합병원 앞에 ‘산재 전문 노무법인’ 현수막이 걸리거나 약국이 있을 법한 자리에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선 것을 종종 봤다. 특정 분야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직업병 연구소/연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주말 등산로 입구에서 사무실 홍보 티셔츠를 맞춰 입고 물티슈, 생수에 ‘산재 전문’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나눠주기도 한다.

노동부 관계자가 “소음성난청 모집인에 대해 아시나요?”라고 물어 와 당황했던 일도 있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때, 다른 지역 청소 노동자와 달리 특정 지역 건물 청소 노동자의 신청 상병은 10가지를 훌쩍 넘는 경우를 접한다. 이런 소견서를 많이 작성한 의료기관은 다른 직종 사건에서도 수십 개의 진단을 내린 소견서를 종종 보낸다. 이런 사례의 경우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도 많다. 근골격계 질환 사건에 40~50개가 넘는 상병이 신청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질병판정위원회 실무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라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던 적도 있다.

‘산재 전문’을 표방하는 인터넷 광고는 치열하다 못해 과열 양상이다. 마치 보험사 상품 광고를 보는 것 같다. 압도적 승인율, 누적 보상금, 누적 처리 건수, 착수금 제로, 성공 시에만 보수 청구를 강조한다. “최대한 보상금 받아드립니다”라며 특화 분야(COPD·소음성난청·건설·폐암 등)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들

은 매월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는다고 한다. 신청 상병 건수 대비 인정 건수에 따라 성공보수를 달리하거나 착수금이 없는 대신 30% 이상의 성공보수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

‘산재 전문’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미끼로 신규 노무사들에게 영입을 제안하는 사무장도 있다고 한다. 노무사, 변호사가 이름만 빌려주는 기형적 구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다. 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산재 보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왜곡된 상황에 대해 공공연하게 ‘기업형 산재 보상 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헛헛하다.

## 검은 공생관계

○○지역에서 “○○병원에 요양신청 소견서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노무사가 동행해야 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노동자가 산재 요양 신청을 준비할 때, 보통은 본인이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의료기관 원무과에 제일 먼저 협조를 구하게 된다. 그런데 원무과를 찾은 노동자에게 병원과 협업하는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를 추천한다면, 그 노동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원무과 산재 담당자가 특정 노무사, 변호사와 경제적 이익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재 전문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사료를 대담한다는 말도 떠돈다.

산재 전문가와 의료기관의 검은 공생관계는 오롯이 노동자의 과도한 수입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착수금이 없는 대신 성공보수 30% 이상의 많은 금액을 약정하고, 산재 전문가와 의

료기관이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른바 리베이트(뒷돈), 브로커, 유착 관계 등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직업윤리를 위반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산재 전문’을 표방하는 노무사, 변호사는 물론, 이들이 고용한 사무장 또는 사무장에 의해 고용된 노무사, 변호사 등 ‘산재 전문’을 표방하는 기업형 산재 보상 시장의 이면에 감춰진 일하다 일그러진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단지 ‘사업 아이템’으로 치부될 뿐이다.

##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시각차

지난해 12월 중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에 관한 노동부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재심사위원회 등 산재보상보험 관련 위원회에 위촉된 노무사들과 노동부 정책관, 근로복지공단 등 정책 실무자들이 만나는 자리였다.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 내용으로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이 선정되었기에, 실무자들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그날 오전 노무사 2명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십수 년 만의 전화 통화다. 요약하면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노무사들이 국선대리인 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두던 시기다. 그나마 알고 지냈던 노무사를 동원해 노무사회의 우려를 전하며 나의 의중을 떠본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막겠다고 했던 후보가 당선

한 배경에는 ‘산재 전문’ 노무사들의 총결집이 있었다는 후문이 나돌 정도다. 당시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다.

정책간담회에서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하는 대신, 간담회에 참석한 노무사들은 한결같이 “산재 사건에 착수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선대리인 제도는 필요없다”, “국선대리인에게 예산만 낭비하고 낮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못해 “노무사가 사건을 수입하면서 착수금을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다”라고 말을 잘랐다. 도리어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핑계로 ‘공장식’으로 대량 사건을 수입하는 일이 횡행하는 노무사업계의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건을 보면 뇌심질환, 정신질환에 비해 근골질환 사건 대리인이 현격히 많아진 상황도 이상하다. 뇌심·정신·직업성 암 사건은 근골질환 사건에 비해 접근도 어렵고 복잡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더라도, 근골질환은 비교적 간단하여 재해 노동자가 대리인 없이도 손쉽게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근골질환 사건에 대리인이 많아진 현상 자체가 산재 보상 시장의 왜곡된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한계도 있겠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비교적 간단한 근골질환 사건, 심사·재심사 사건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선대리인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

인의 선정 기준, 교육, 지원 대상 범위, 적절한 보상, 배정 및 관리 전담자 배치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왜곡을 낳은 구조를 바꾸자

이런 왜곡된 상황이 노무사들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일하다 일그러진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중심에 놓고 신속한 보상, 제대로 된 치료, 사업장 복귀,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과제로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 법정 재해 조사 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업종, 직종 확대),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 명문화,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산재 판정 자료 공시, 산재 판정 기구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선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



▲ 전국 곳곳에 산재보상을 해주겠다며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영업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사진: 한노보연

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2015두3867 판결)”라며 공적 사회보장 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하다 몸과 마음이 일그러진 노동자들이 자신의 질병 원인이 일터나 직업에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모집인’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의 법률 지원이 없더라도 나홀로 신청이 가능한 행정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공정, 재해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글로 쓰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한 재해 조사(현장 조사)를 강화해 행정이 노동자를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재해 조사를 통해 작업공정을 파악하고, 노동자·사용

자 주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조사 인력을 충분하게 늘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산재보상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알터**